

	규정	문서번호	TWP-B213
		제정일자	2010. 07. 01.
	건설위원회 규정	개정일자	2015. 12. 15.
		개정번호	2

목 차

부칙

작성부서	사무처	제정일자	2015. 07. 01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	승 인
		사무처장	취업지원 처장	산학협력 처장	학생처장	교무처장	행정부총장	총 장
서 명								
일 자								

	규정		문서번호	TWP-B213
			제정일자	2010. 07. 01.
	건설위원회 규정		개정일자	2015. 12. 15.
			개정번호	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의 각 건물의 합리적 유지 관리와 건물의 신, 증축 및 개축 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원대학교 건설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12.15.>

- ② 위원은 주요보직 처(실)장과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- ④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총장의 임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12.15.>

1. (삭제) <삭제 2015.12.15.>
2. (삭제) <삭제 2015.12.15.>
3. (삭제) <삭제 2015.12.15.>
4. (삭제) <삭제 2015.12.15.>
5. (삭제) <삭제 2015.12.15.>
6. (삭제) <삭제 2015.12.15.>
7. 10억 이상의 신축·증축 건축공사<신설 2015.12.15.>
8. 5억 이상의 대수선공사 및 토목·조경 공사 <신설 2015.12.15.>
9. 3억 이상의 건축·전기·기계 시설 개보수 공사<신설 2015.12.15.>

제5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 필요한 경우에는 과반수 위원의 제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 제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유지의무)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, 결정하는 사항 및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	규정		문서번호	TWP-B213
			제정일자	2010. 07. 01.
	건설위원회 규정		개정일자	2015. 12. 15.
			개정번호	2

제8조(사무관장) 위원회 관련 업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15.12.15.>

제9조(T/F팀)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T/F팀을 둘 수 있으며, T/F팀의 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